

저작권법의 이해

강 해 작 / 도서출판 기문당 대표



1. 저작권법 개념

저작권이란 문학·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그 저작자가 독점하여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하여는 나라별로 조금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앵글로색슨법 계통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리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법 계통에서는 저작물이 정신적인 결실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재산적인 권리 이외에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이외에 저작인격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영향으로 애독하거나 이용하면 그 자체를 명예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저작인격권만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1987년 7월 1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세계 저작권협약(UCC)이 198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고, 베른협약에 1996년 8월 21일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UR지적소유권협정에 따라 ‘베른협약’에 가입, 외국인 저작물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보호되고 소급보호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호주의의 원칙 :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2.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써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물이다. (대법원 판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객체가 바로 창작물이므로 저작물성의 인정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된다.

2.1 이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의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편집저작물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2.3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의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용 허락은 공동 저작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4 단체명의 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3. 저작권의 분류

3.1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공영권 : 그 저작물을 공영할 권리를 가진다.
- 방송권 :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3.2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공표되지 아니한 건축·사진·미술 저작물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 ①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②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③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3.3 공동저작물의 인격권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3.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 ③ 법원의 판결 ④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①, ③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3.5 저작자 정의

- ① 원칙 : 저작물을 창작한 본인(자연인)이 저작자가 됨.

- ② 예외 : 일정한 요건으로 법인·기관 등 단체가 됨.

3.6 저작자 추정 요건

- ①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②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 ③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저작권자의 정의

- ① 원칙 : 저작자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자 됨.
- ② 저작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상속받는 자.
- ③ 예외 : 영상저작물의 경우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자.

5. 저작권 보호기간

- ① 원칙 : 저작재산권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사망자를 기준으로 사후 50년 보호
- ② 예외 : 무명저작물 공표 후 50년 보호
 단체명의 저작물 공표 후 50년 보호
 영상·실연·음반저작물 공표 후 50년 보호
 (저작자가 1957년 7월 1일 이전 사망시 구법에 의하여 자유이용 가능)

6. 저작물 자유이용 요건과 범위

저작물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공익과 사회적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제한하고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 ①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행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등학교 및 이하의 학교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7. 저작권법상 ‘외국인저작물’ 의 보호제도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저작권법이 전문 개정되기까지 미국으로부터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미국이 가입한 ‘세계저작권 조약’ 과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외국인 저작물을 불법 복제할 경우 내국인(한국인)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외국인 저작물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사람이 미국 땅에서 창작하고 미국 출판사에서 발간하였을 때 해당된다.

또 하나는 외국 사람이나 법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창작하고 발간하였을 경우이다. 설사,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처음 발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외국에서 발행한 다음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하면 된다.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모두 해당된다. 여기서 ‘상시거주’ 라 함은 장기간 체류를 의미한다.

국제조약 가입에 따라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원칙이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모든 권리는 외국인, 내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보호받기 때문에 외국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참고. 앞의 상호주의 원칙)

8.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8.1 원칙

권리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친고죄.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8.2 민사상 구제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고의·과실을 불문)

8.3 손해배상의 청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손해액의 추정, 부정복제물 부수 추정)

8.4 명예 회복 등의 청구

저작인격권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필요조치 강구(사죄 광고 등)

8.5 형사상 구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친고죄)

부정발행 등의 죄는 비친고죄임.

8.6 권리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간변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함.

※ 내용의 저작권법 조문 표시는 생략하였음.